

# 울산광역시북구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제 1318 호 2021. 11. 25.(목)

### 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7호[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] … 1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71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(협의) 고시] ……………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72호[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] ……………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73호[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1-141호선)] ……………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74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 ……………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7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…………… 7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**이동권** (인)

2021년 11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7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날 04:00”를 “24:00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조제2항 중  
“수거요일 전날”을 “배출일”로, “04:00”를 “24:00”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**1. 개정이유**

-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 울산지역 타 구·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출과 수거가 용이한 시간 때로 배출시간을 조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'매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04:00사이에'를 '매일 일몰 후부터 24:00사이에'로 개정
- 나. 재활용가능폐기물은 '지정된 수거요일 전날 일몰 후부터 04:00까지'를 '지정된 배출일 일몰 후부터 24:00까지'로 개정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71호

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(협약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(협약)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23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연월일 : 2021. 11. 23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인공구조물 설치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-151번지 일원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 - 가. 면 적
    - 1) 일시: 476m<sup>2</sup>
    - 2) 계속: 71m<sup>2</sup>
  - 나. 기 간
    - 1) 일시: 2021. 11. 23. ~ 2022. 3. 31.
    - 2) 계속: 2022. 4. 1. ~ 2026. 5. 31.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(하수관리과)
 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동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72호

## 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

「하천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(협의)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울산광역시 복구청장(환경위생과)		
주소	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		
점용 위치	○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608-1번지	하천의 명칭	○ 동천
점용 내용	○ 나무의 식재	점용 면적	○ 계속: 360.0m <sup>2</sup>
점용 기간	○ 계속: 2021. 11. 23. ~ 2025. 12. 31.	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73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41호선) 실시계획(변경 1차)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4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41호선)사업
  - 나. 명 칭: 강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산120번지 일원
3. 사업규모:
  - 기정 : 도로개설(B=10m, L=251m, A=4,755㎡)
  - 변경 : 도로개설(B=10m, L=251m, A=4,760㎡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: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
  - 나. 주 소: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, 603호
5. 사업기간
  - 가. 인가일로부터 ~ 2021. 12. 31.
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8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(☎052-241-79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74호

## 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		
주소	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-10번지		
점용 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50-3번지 일원</li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47번지 일원</li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46-2번지 일원</li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958-29번지 일원</li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935-216번지 일원</li> <li>○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264-7번지 일원</li> </ul>	하천의 명칭	○ 무룡천
점용 내용	○ 도시가스 배관매설	점용 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시: 133.2㎡</li> <li>○ 영구: 16.28㎡</li> </ul>
점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시: 2021. 11. 24. ~ 2021. 12. 30.</li> <li>○ 영구: 2021. 12. 31. ~ 2025. 12. 31.</li> </ul>	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76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주림1길 94	무룡동 396	2021. 11. 25.	건축물 멸실
관문길 96-5	천곡동 838	2021. 11. 25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11. 2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